

제 15 장 장기요양센터 이용계약

제164조 (서비스 이용계약)

- ① 계약의 목적: 센터는 입소자가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다.
- ② 계약기간: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조정된다.

제165조 (이용비용) 대상자의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한다.

제166조 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)

1. 비급여

“비급여”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한다. 비급여 항목은 매년 물가와 센터의 형편에 따라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, 변동 될 수 있으며 조정,변동된 사항은 보호자와 이용자에게 반드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알린다.

2.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

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,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(실비)은 납부해야 한다.

제167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1.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2.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①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(비급여 내역 포함) 및 내용을 들을 권리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
 - ②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와 수급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
 - ③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무와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.
 - ④ 신변으로 인하여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와 병원 입원시에 간호 및 간병,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제168조 (계약해지) 대상자의 신체적, 정신적,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.

1. (계약의 해제 및 종료)

① 계약해지

센터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.

1. 어르신건강과 중요한 정보,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2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이상 지체했을 경우
3. 입소자의 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.
4. 입소자가 고의로 센터물을 파괴 및 훼손하거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.

2. (계약의 종료)

- ①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
- ② 센터가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-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

3. (장기요양급여내용 및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)

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및 그 외의 비용의 변경 시 .변경된 내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한다. 만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.

-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
- ②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④ 자격변경

4. (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)
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(본인 부담금, 비 급여)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센터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(단 상비약은 청구하지 않는다)

- ① 일상생활서비스: 식사.배설.목욕.구강.두발.손발.세면.회음부.옷갈아입히기.체위변경.이동요양
- ② 건강지원 및 응급 구호 서비스: 건강관찰 및 확인.투약.치매.간호및처치.응급구호. 예방관리. 협약기관 진료
- ③ 의사소통 및 각종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: 신체,인지등 프로그램 제공. 의사소통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.
- ④ 재활치료서비스: 일상생활동작훈련. 물리치료. 신체기능훈련. 작업치료 및 인지. 정신기능훈련